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3146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3.10.10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17

flex sports@naver.com



정보공개서

주식회사 플렉스포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 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 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 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898-007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804-050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 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 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 청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Т	^가 맹본부의 일반 현황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맹점사업자의 부담
٧.	병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٧Щ.	- 박 · 군 근 에 - 데 인 - 인 O · · · · · · · · · · · · · · · · ·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즤	주 소					
	플렉스 스	스포츠						
	아카데미		거기도 한다가 되시고000비가 1도 기되으초(되시도 구시고기기)					
	(FLEX SF	PORTS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리					
주식회사	ACADEMY)							
플렉스스포츠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09.01		2022.09.06	김현진	02-898-0070		02-804-0501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491		사업자등록번호		145-88-0229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조일프라자)	지하3층(하안동,
(임원)	김현진	(FLEX SPORTS ACADMEY)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현진	02-898-0070	02-804-0501
	최병기	플렉스 스포츠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사용인		아카데미		조일프라자)	
(임원)		(FLEX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SPORTS ACADMEY)	김현진	02-898-0070	02-804-050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FLEX SPORTS ACADEMY)	-
상 호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FLEX SPORTS ACADEMY) OO교육원	_
상표(서비스표)	FLEX SPORTS ACADEMY	상표출원번호 : 4020220018868
광 고	_	-
그 밖의 영업표지	_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07,127	126,892	-19,765	55,516	-29,767	-29,765
2023년	54,566	53,857	709	220,448	17,073	20,474
2024년	141,735	121,174	20,561	438,396	3,882	19,851

가맹본부의 매출액으로써 그 근거자료는 별첨 3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르	사업경력이름						
#1297	10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김현진	2022.09.~현재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대표이사	업무 총괄				
관련 임원	최병기	2022.09.~ 현재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이사	업무 보조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भीयने	임원	수(명)	기이스(대)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2	_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Tel: 02-898-0070 FAX: 02-804-0501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FLEX SPORTS ACADEMY	제41류	2022.01.27.출원	출원번호 4020220018868	김현진	-

당사는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김현진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가맹사업 종료시까지) 사용권을 득하였습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은 등록되지 않아(출원 상태)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사업 현황

1.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를 시작한 날: 2024.03.01.(최초 가맹계약 체결일 기준임)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2.09.06)

2.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플렉스			
	스포츠			
㈜플렉스	아카데미	 김현진	2024.03 ~ 현재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스포츠	(FLEX	검언신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SPORTS			
	ACADEMY)			

3.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업종

영업표지	업종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FLEX SPORTS	스포츠 관련	체육 입시 교육				
ACADEMY)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FLEX SPORTS ACADEMY)]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ch	2	2022.12.3	1.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	_	1	1	_	1	11	10	1
 서울	_	_	_	_	_	_	2	2	_
 부산	-	-	_	-	_	_	_	_	_
대구	-	_	_	-	_	-	_	_	_
인천	-	-	_	-	_	_	-	_	_
광주	_	_	_	-	_	_	_	_	_
대전	-	_	_	-	_	_	1	1	_
 울산	-	-	_	-	-	_	_	_	_
세종	-	-	_	-	-	_	_	_	_
경기	1	_	1	1	_	1	4	3	1
	-	_	_	-	_	_	1	1	_
충북	-	_	_	-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	1	1	_
경남	_	_	_	_	_	_	2	2	_
제주	_	_	-	_	_	-	_	_	-

5. 바로 전 3년간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_	_	_	_	_	_
2023	0	0	0	0	0	0
2024	0	10	0	0	0	10

6.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가맹	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구 매출액		
7) (1)	2024년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³ 매출액(-	연간 ³ 매출액(น) 🗃
지역	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비고
전체	10	108,204	1,340	281,622	29,597	27,518	261	10곳 중 8곳 산정
 서울	2	해당없음		_		-		5곳미만
 부산	-	해당없음		_		_		5곳미만
대구	-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인천	-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광주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대전	1	해당없음		_		-		5곳미만
울산	_	해당없음		_		ı		5곳미만
세종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기	3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강원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Tel: 02-898-0070 FAX: 02-804-0501

충북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충남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전북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전남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북	1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남	2	해당없음	_	_	5곳미만
제주	_	해당없음	_	_	5곳미만

※경남(김해율하점), 대전(대전점)은 점주 일신상의 사유로 영업 중단 중으로 매출액 자료확보가 어려워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0개가 아닌 실제 8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지점별 국세청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되는 가맹점의 경우 일 평균 매출액을 산출 한 다음 1년으로 확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나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기준 가맹점이 없어가맹점 사업자 평균 연간 매출액 산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를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0	294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지사 및 지역총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 =	, ,	/ L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	
합계			35,424	्राः (धास	-		
광고, 판촉	37/L 87000 30	(비공개)	35,424	३७६ (धास	-	77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하안동금융센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92	02-894-181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필요서류 (은행양식)	- 가맹금예치신청서 1부
준비서류	우리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 - 가맹점사업자의 타행계좌 사본 1부 - 가맹점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1부
이용방법	 방법1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에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방법2 가맹본부가 우리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등록 →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문자로 발송 → 휴대폰 문자로 받은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 우리은행 계좌가 없어도 예치가맹금의 예치가 가능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Tel: 02-898-0070 FAX: 02-804-0501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630	_	_	_	_
가맹비	3,300	가맹계약 체결 시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과 오픈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가입비(가맹비의 90%)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 개점 전 운영교육, 오픈 지원(가맹비의 10%)
교육비	330	가맹계약 체결 시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 전 교육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

결한 경우

-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액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합계	3,630
가맹비	3,300
교육비	33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66m²>준 (약30평)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103,000	3,433	-	-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간판	협력업체	3,000	_	_		-
인테리어	협력업체	80,000	2,667	_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
집기류	협력업체	20,000	_	물품입고시		-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②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 ③ 위 표 항목(정보공개서 V-1 내역 중 거래상대방 강제항목은 제외)은 귀하가 직접설치/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간판 및 인테리어를 직접 시공할 경우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기획관리를 받아야 하나 별도의 기획관리비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④ 철거공사, 음향시설, 상하수도, 전기증설, 화장실, 냉난방기, 도시가스, 소방공사, 전화기 등은 별도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①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입지선성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른 추가 발생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납부하는 가맹금은 분납할 수 없으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약	결티	가맹본부	월 330천원	익월 5일	반환안됨	로열티는 상호, 상표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후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적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개점 이후 교육 비	수시교육 특별교육 재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실시 7일 전	교육실시 1일 전 취소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분담금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범위에 따라 협의된 분담비율 중 귀하 분담금	분담금 명세서 수령 후 10일 이내	광고·판촉 행사진행 후 반환안됨	광고·판촉 행사비로 비용소요	광고·판 촉 행사별 분담 기준은 V-9을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관류 차료		해당없음				
영업 변경 따 간판 비	표지 등에 른 변경 용	가맹본부	실사 후 상호협의하여 결정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	지역		해당없음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주식회사 플렉스스포츠 Tel: 02-898-0070 FAX: 02-804-0501

보장금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VII-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당사는 2024년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직접 차액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시 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매장 및 그주변에 대한 촬영이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자료요청은(서면, 이메일, FAX,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 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

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I-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의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금일백육십오만원(₩1,650,000)<부가세포함>), 교육비(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금삼백삼십만원(₩3,300,000)<부가세포함>), 교육비(금삼십삼만원(₩330,000)<부가세 포함>)을 납입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 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서 "구)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또는 "전)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당사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당사가 철거 및 삭제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②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 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④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 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별첨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별첨 1. 물품 구입 및 임차현황 참고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물품은 없습니다.

人山	≖ ₽ /rlol\	공급	구분	
순번 품목(단위)	상한	하한		
_	_	_	_	_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 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2. 상품 및 용역명 참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①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 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상품·용역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품·용역 추가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상품·용역을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 (FLEX SPORTS ACADEMY)의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해당제품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①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②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

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경 품·중 역명 별첨 2. 상품 5		공문 발송 및 전화통지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공지	당사와 귀하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기타 사정을 고려, 권장 소비자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①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원 연조 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플렉스 스포츠		
체육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아카데미	해당없음	
	(FLEX SPORTS ACADEMY)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당(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 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 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62	38	_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 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11조 2항 각호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1-1-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겨	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조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6조	
3.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7조	12조
4. 가맹점사업자가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8조	1항
5.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9조	각호
6.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4조	
7.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 통지하지 않는	18조	
경우	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예 :성추행, 폭행, 욕설 등)를 할 경우		: 1항 ·호
10.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

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조 3항 각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 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아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당사는 귀하에게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 면으로 승인신청→ 상속인 면담 → 승 인 여부 통지(10 일 이내) → 상속 인이 당사에 교육 비 지급 → 상속인 교육 → 가맹점운 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상속절차와 동일	
업무위탁		권리의무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V-6-1) 가맹계약의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6-1) 가맹계약의 기간 에 따른 기간 가맹계약 해지 이후 1년간	- 체육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 ~ 22:00	휴무일 없음	명절은 재량휴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용	
Quality(서비스의 표준화)	상품·용역 준수, 시설상태 점검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ilness(청결)	매장청소현황 및 청결상태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 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기준 및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광고 성격	부	담비율	보다 저희	ਸ੍ਹੀ ਹ
구분	정보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광고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귀하 부담분	→1개월 전 분담금명세서 발 송	가맹점사업 자간 균등부담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수령 후 10일 이내 지급	
	판촉물 제작	판촉물 기획 총 비용	카다로그 등 판촉물 관련 제작 총 비용 중 귀하 부담분	판촉기획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판촉 전체 행사	상품권 발행	상품권 기획 총 비용	온라인 · 모바일 등 상품권 관련 수수료 총 비용 중 귀하 부담분	군 급군 건경 →1개월 전 분담금명세서 발 송 →수령 후 10일	가맹점사업 자간 균등부담
	할인 및 경품 등 제공 판촉행사	판촉행사 기획 총 비용	상품의 할인비용, 경품·기념품 등 제작·제공 총 비 용 중 귀하 부담분	이내 지급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 스	제휴 행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휴서비스 진행 안함

※ 당사는 가맹사업 및 전국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로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판촉행사의 목적·횟수·시기·매체 및 할인판매·경품제공·이벤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 사가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 전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인 경우당 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 시행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 사가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동의비율 이상 동의를 받은 광고 및 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동의 비율 기준에 따라 귀하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전국 및 지역 단위 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광고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5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하고, 전국 및 지역 단위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지역 판촉행사일 경우 지역에 해당하는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이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 시행합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이를 시행할수 있습니다.

※※※ 위 내역은 당 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개별적인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광고 및 판촉의 계획과 문안, 기타 광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일부의 광고 및 판촉 비용을 부담한 경우 집행내역 통보 내용

당사는 사업연도 중 귀하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에게 통보하고 있습 니다.

집행내역 통보 내용

-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 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 및 판촉행사로 집행한 비용 및 귀하가 부담한 총액
- ※ 귀하가 세부 산출근거가 포함된 광고매체별 광고 횟수·단가 또는 판촉행사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당 사는 열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을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계약해지·종료 시 귀책사유 있는 자가 가맹계약서 제13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상대방은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385,000원)의 위약벌을 각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 ③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 3자에게 가맹계약서 제 14 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 3 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해지일 직전 귀하로부터 발생한 12개월 "월 평균 당사의 수익" X 잔여개월수

^{*}영업일이 12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표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당사의 수익으로 계산합니다.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합니다.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당사의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산정합니다.

^{*}당사의 수익이라 함은 로열티 등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귀하를 통해 당사가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수익을 통칭합니다

④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제 9 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은 1,000 만원으로 한다.

- ⑤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9 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며, 그 손해배상액은 5.000 만원으로 한다.
- ⑥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 6 조 제 2 항(물품의 조달과 관리) 제 1 호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해당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하며, 그 손해배상액은 1.000 만원으로 한다.
- ⑦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⑧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기타 계약서 및 견적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⑨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⑦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_	60일 내외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14일	IV. 가맹점사업의 부담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및 예치	1일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간판설치 미팅	-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1일	1)~4)를 참고하시기
공사 착수	- 실내외 공사 실시	40일	바랍니다.
교육실시	- 개점 전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15일	
리허설	- 가맹점사업자 자체 리허설	2일	
점포 개설	- 영업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관련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 점포의	ㅇ 간판교체 비용	ㅇ점포의 확장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점포환경	
시설, 장	ㅇ인테리어 공사	또는 이전을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개선일로	
비 인테리	비용(장비·집기	수반하지 않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	부터 3년	
어 등의	의 교체비용을	는 점포환경	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이 내 에	
노후화가	제외한 실내건	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가맹본부	
객관적으	축공사에 소요	ㅇ점포의 확장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의 책임	
로 인정되	되는 일체의 비	또는 이전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	없는 사	
는경우	용. 단, 가맹사	수반하는 점	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유로 계	
0 위생이나	업의 통일성과	포환경개선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약이 종	
안 전 의	무관하게 가맹	40%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	료 (계약	
결 함 으	점사업자가 추		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	의 해지.	
로 인하	가 공사를 실시		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	영업양도	
여 가맹	함에 따라 소요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포 함) 되	
사 업 의	되는 비용은 제		담액을 지급	는 경우	
통 일 성	외)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본부	
을 유지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	부 담 액	
하기 어			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중 잔여	
렵거 나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	기 간 에	
정상적인			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비례하는	
영업에			분할 지급	부담액은	

현 저 한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지급하지
지 장 을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아니하거
주는 경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이미
우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 급 한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경우에는
	부담액의 40%)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부담
가맹본부	가맹점 운영과 관련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단, 개선에
요청 시	된 경영지도	파악 → 개선사항 발생시 가맹점에 서면	소요되는
		으로 해당 내용 안내 → 개선사항 시정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	가맹점
가맹점사업자	가맹점 운영 전반에	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	
요청 시	대한 경영지도	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	부담
		도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개점 전)	-개점 전 서비스 교육 -개점 전에 필요한 제반 교육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새로운 서비스 교육 -운영방침 및 판매/ 서비스기법 등	집체교육	별도 공지	필요시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대해 실시	집체교육	별도 공지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플렉스 스포츠 아카데미(FLEX SPORTS ACADEMY)]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 용	비고
신규 교육	15일 (점주 협의하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최초 가맹비에 포함 33만원 (VAT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교육대상자 2인)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요시
재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시 1개월 전에 실비 및 최소시간 공지)	실비	필요시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최소 교육인원(귀하 포함최소 2명)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① 당사가 귀하(귀하 포함 최소 2명)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 거나(정해진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는 경우 포함)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 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의 새로운 상품·용역 서비스 추가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새로운 상품·용역 서비스 교육을 받고 해당 상품·용역 서비스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상품·용역 서비스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새로운 용역서비스 교육 외특별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광명교육원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288번길 15, 지하3층(하안동, 조일프라자)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2년3개월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438,39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 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 재한 것입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2 상품 및 용역명

상품 및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VAT별도)
다이어트(주 2회)	120,000
다이어트(주 3회)	150,000
다이어트(주 4회)	180,000
유소년스포츠(주 1회)	70,000
유소년스포츠(주 2회)	120,000
공무원체력(주 2회)	160,000
공무원체력(주 3회)	240,000
체대입시 1학년(주 2회)	200,000
체대입시 2학년(주 2회)	250,000
체대입시 2학년(실기집중반)(주 3회)	300,000
체대입시 3학년(주 3회)	400,000
체대입시 3학년(주 4회)	500,000
체대입시 3학년(주 5회)	600,000
체대입시 시즌특강(주 6회)	3,000,000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무상태표(2022년~2023년)

[별첨 4.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 치단체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1.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 행정구역 (v 표기)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u> </u>

2.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의 정보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2			
3			
4			
5			
6			
7			
8			
9			
10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점포만 표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9.>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상호(영업표지)						
가맹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 법률」 제6조의5제1 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		법 시행령	제5조의	박9제2	항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	관의 장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시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 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귀하

(지점장)